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150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광안신용협동조합

2. 조치내용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「신용정보법」상 ‘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’에 대하여 과태료 6백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기 관

1.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

○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·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는데도

- 광안신용협동조합은 20xx.x.xx. 조합원 ○○○에 대해 보증채무가 없음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보증정보(xx억원)를 착오로 등록하였음

나. 근거법규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제1항
○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 제1항